

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표번호

관할지역	기관명	부서	전화번호
서울특별시	서울광역본부	산업안전부	02-6711-2896
	서울남부지사	안전보건부	02-6924-8738
	서울동부지사	안전보건부	02-2086-8022
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¹⁾	인천광역본부	산업안전1부	032-5100-541
	경기북부지사	산업안전부	031-828-1931
	고양파주지사	안전건설부	031-540-3843
	경기중부지사	산업안전부	032-680-6540
경기도 ²⁾	경기지역본부	산업안전2부	031-259-7114
	경기서부지사	안전보건2부	031-481-7515
	경기동부지사	안전보건부	031-785-3343
부산광역시	부산광역본부	산업안전1부	051-520-0604
울산광역시	울산지역본부	산업안전부	052-226-0576
경상남도	경남지역본부	안전보건2부	055-269-0540
	경남동부지사	산업안전부	055-371-7554
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	광주광역본부	안전보건체계지원부	062-949-8746
	전남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61-288-8742
	전남동부지사	산업안전부	061-689-4954
전라북도	전북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63-240-8544
	전북서부지사	안전보건부	063-460-3624
제주도	제주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64-797-7521
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	대구광역본부	산업안전부	053-609-0550
	대구서부지사	산업안전부	053-650-6837
경상북도	경북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54-478-8023
	경북동부지사	산업안전부	054-271-2043
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	대전세종광역본부	산업안전부	042-620-5647
	충남지역본부	산업안전부	041-570-3441
충청북도	충북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43-230-7124
	충북북부지사	안전건설부	043-849-1045
강원도	강원지역본부	안전보건부	033-815-1032
	강원동부지사	교육안전부	033-820-2552

1) 김포시, 부천시, 고양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

2)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안성시, 오산시, 안산시, 시흥시, 안양시, 군포시, 과천시, 의왕시, 광명시, 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 및 양평군

한국환경공단 T. 032-590-4991

한국가스안전공사 T. 043-750-1236, 1239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검사 및 안전진단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

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(성안동)

2023-전문기술실-97

안전은 권리입니다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검사 및 안전진단

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Ⓢ 관계자외출입금지
Ⓢ 화기엄금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[별표5]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,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*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, 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합니다.

*취급시설: 제조·사용시설, 실내/실외 저장시설, 실내/실외 보관시설 등 9개 종류 시설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10호 ~ 18호

구분	설치 및 관리기준
반도체 제조업	「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20호)
항만구역	「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21호)
염색업	「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3호)
표면 처리업	「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2호)
그 외	「제조·사용시설, 실내/실외 저장시설, 실내/실외 보관시설 등 9개 종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10호 ~ 18호)
소량	「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5호)

※ 단, 염색업 및 표면처리업 설치 및 관리기준은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적용가능(세부 내용은 해당 고시 참고)

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

표준시설

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.

환경부고시 제2023-26호(23.2.13.)

소량시설

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」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
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1호(21.4.1.)

검사의 종류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검사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.

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/주기

구분	시기/주기	
설치검사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	
정기 검사	영업허가 대상인 경우	1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	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	2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수시 검사	화학사고 발생	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
	화학사고 발생 우려	지방환경관서의장이 통지 시
안전 진단	설치/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	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	결과 없는 경우	사고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 (=시행규칙 제19조2항에 해당하는 시설) 12년 마다
	가위험도	4년 마다
	나위험도	8년 마다
	다위험도	12년 마다

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



검사 및 안전진단수수료의 산정

수수료 부과근거: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

검사·안전진단 수수료는 제조사용, 실내저장보관, 실외저장보관, 지하저장보관, 차량운송 및 운반시설, 배관이송설비 등 시행규칙 [별표5]에서 규정한 시설별로 구분하고, 각 시설별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
세부내용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고시 제2023-13호(23.1.12)

검사 및 안전진단 적용 기준

구분	기준	검사표(적/부 판정기준)
기존 시설	'14. 12. 31. 이전 설치, 운영 및 착공 시설	환경부 고시 제2023-26호 (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)를 적용하여 판정
신규 시설	'15. 1. 1. 이후 착공 시설	

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

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

<http://kosha.or.kr/cheminsp>



※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시 문의사항은 각 관할 기관으로 문의

※ 신청양식: 환경부 고시 제2023-26호(23.2.13.) [별지1]서식